

세무·회계·경영(TAM) 쟁점뉴스 요약

6월까지 관광·숙박에 쓴 돈 '소득공제 80%' 받는다

정부가 숙박·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이 말부터 6월말까지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 과 관계없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높인 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출할 비용이 있으면 먼 저 결제하고 물건도 미리 구매해서 민간 업체들을 지하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 제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체크카드와 현 급영수증 소득공제율을 음식, 숙박, 관광, 공연, 여객 운송업 등에 대해선 6월까지 80%로 높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6월까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을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60%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 이 비율을 더 높인 것이다.

예정된 지출을 4~6월에 당겨서 하는 기업에는 세 제혜택을 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기업이 7~12월 중 업무에 필요한 물품·용역의 구매를 법인카드로 선결제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허위매출 및 불법 자금융통과 관계 없는 카드 선결제는 가능하다'는 내용의 유권 해석을 할 방침이다.

기업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3 개월 이상 앞당겨 4~6월 중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를,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1% 세액공제 해준다.

또 중소기업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지난해 연간 이익과 올해 상반기 결손이 발생할 경우 8월말까지 신청 시 올해 상반기 결손금을 조기 공제·환급할 수 있게 했다. 현행은 내년 신고 시에만 공제가 가능하 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2조1000억원 규모의 선결제· ■ 선구매를 도입해 피해 업종 수요를 직접 보강하도록 ■ 했다. 외식업체에 대해선 900억원 규모의 업무추진 ■ 비를, 항공업계엔 국외여비 잔여 항공권 구입 물량 ■ 의 80%인 1600억원을 선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한 ■ 다.

500만원 세금 못 냈더라도… 국세청, '납부독촉' 자제한다

국세청이 영세 소액체납자에 대해 계좌 압류를 보류하는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국세청은 체납액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사 업자에 한해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매출액 기준으로 10~120억원 이하인 소기업이거나,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도소매업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1억5000만원 미만 등)가 대상이다. 약 39만 3336명(체납액 4523억원)이 혜택을 본다.

이 조치가 이루어지면 체납자의 압류된 부동산 때 각은 보류·중지되고, 새로운 압류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이 유예된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 드·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선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 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빠진다.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더라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홈텍스)할 수 있 다. 여기에 이달까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 이던 2020년 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5만6000여명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자료 제공도 6월말까 지 연기된다.

4월 이후 독촉장을 송달 받은 납세자가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 못 했을 때도 세정지원이 이루어진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 한해 납부 유예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선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최대 9개월) 동안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 실실하겠다"고 했다.

2020 · 04 · 15 www.taxpark.com 15